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폭행·협박으로 직업소개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수준 상향 등 〉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73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 검토의견	3
------------------	---

1. 폭행·협박으로 직업소개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수준 상향 등 ...	3
---	---

I. 제안경위

2025년 2월 3일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산업 등 국가핵심산업의 경우에 다수의 회사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자의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 기술인력 브로커들이 핵심기술인력의 해외 유출을 알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현행법의 형벌 수준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매매 목적 등의 직업소개,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는 직업소개를 한 자의 경우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인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폭행·협박으로 직업소개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수준 상향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폭행·협박 등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와 성매매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현행 7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②무등록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나 무허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국가핵심기술인력에 대하여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6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u>7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제46조(벌칙) ① ----- ----- ----- <u>15억원</u> ----- -----. 1. (현행과 같음)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u><신 설></u> ②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인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함)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위 사람에게 처해지는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7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②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의 부과 대상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인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표]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폭행·협박 등으로 직업소개를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u>7천만원</u>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5억원</u> 이하의 벌금
성매매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u>7천만원</u>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5억원</u> 이하의 벌금
국가핵심기술인력에 대하여 국외유료직업소개 등을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5억원</u>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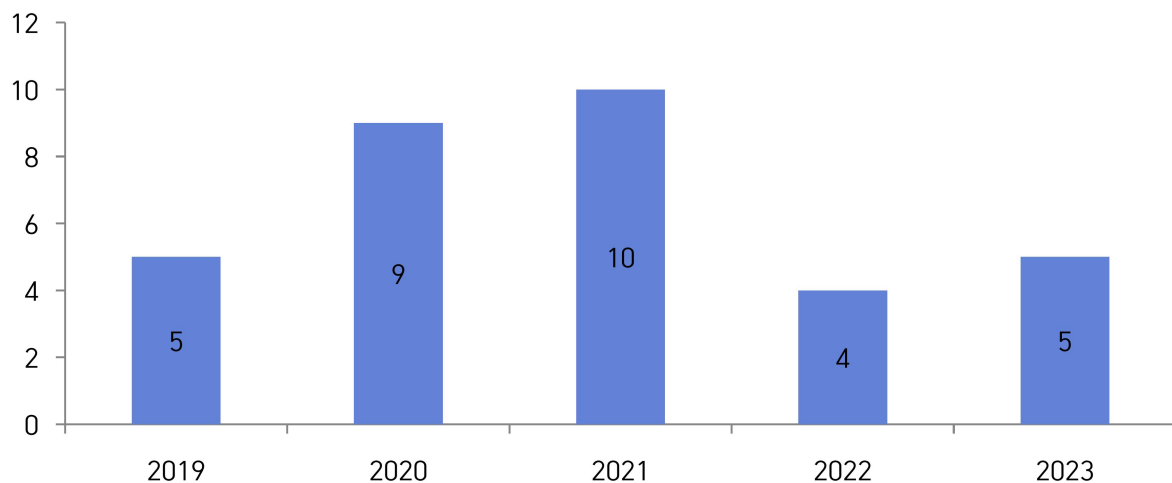
개정안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직업소개, 성매매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하려는 직업소개 등에 대한 벌금 수준을 상향하여 구직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의 경제적·군사적·기술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유출 시 국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2019~2023년 동안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수가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5건 이상인바,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그림] 산업기술 · 국가핵심기술 유출 추이

(단위: 건)



※ 자료: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5~'27) 재편집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은 법정형의 범위를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와 타 법에서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 당 1천만원에 상응하도록 하되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 제45조(법정형) ① 법정형은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41조에 따른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규정할 수 있다.

②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서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성매매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 등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타 법과의 균형,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형벌 부과 균형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둘째,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함)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소개·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65억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므로²⁾, 2025

③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벌금액의 적정수준을 정한다.

1. 일반적으로 벌금액의 최고액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2. 벌금형을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한다.

징역	벌금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2) 「산업기술보호법」(2025.7.22.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년 7월 시행 예정인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안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 제46조제1항제3호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급·전문인력은 현행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³⁾, 다른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이하 생략)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5. (생략)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3)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 ⑥ (생략)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고용노동부는 국가핵심기술인력의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성매매 목적 등의 직업소개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나, 벌칙 수준의 조화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